

## <참고1>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

### <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>

(비수도권 지역인재) **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**

※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,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
## 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###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
※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 공시 기준으로 분류하며, 지원 전 대학 알리미를 통해 출신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 확인 요망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
- 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 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## 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